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심 사 보 고 서

2002. 7. 13.

행 정 위 원 회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2년 7월 2일 영등포구청장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2002년 7월 2일 회부
- 다. 상정일자 : 제89회(임시회) 제1차 위원회(2002.7.13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 : 행정관리국장 정진)

가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(대통령령 제17624호)
- 지방구조조정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필요
- '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우리구 구조조정 마무리

나. 주요내용

- 조례 460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 신설
-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 : 민창규)

동 개정조례(안)은 본 조례 제460호 부칙 제3조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의 “부칙 제3조를 부칙 제3조제1항”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2항에 “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 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”로 신설하는 것으로 이는 그동안 지방구조조정의 마무리를 위한 조치로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 상태를 합리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상위 관련 법령이 개정된 바 우리구에서도 본 개정내용에 따라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 가결이 적절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 : 원안 가결**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**

| | |
|------------|---|
| 의 안 번 호 | 3 |
|------------|---|

제출년월일 : 2002. 7. 2
제출자 : 영등포구청장

1. 개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에 관한 규정 개정(대통령령 제17624호)
- 지방구조조정과정에서 정원과 현원의 불일치상태를 일치시키기 위한 조정기간 필요
- '98년부터 4년간 국정개혁 일환으로 추진한 우리구 구조조정 마무리

2. 주요골자

- 가. 조례 제460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제2항 신설
○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을 2003년 2월 28일까지 별도 정원으로 관리

3. 참고사항

- 가. 관련법규 :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
(대통령령 제17624호 2002.6.10)
나. 합의사항 : 합의되었음
다. 예산조치 : 해당없음

붙임 :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(안)

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460호 서울특별시영등포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 부칙 제3조를 부칙 제3조제1항으로 하고,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

부 칙

(시행일) 이 조례는 2002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(안) |
|---|---|
| <p>부 칙</p> <p>제3조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 생 략</p> <p><신설></p> | <p>부 칙</p> <p>제3조 (정원에 관한 경과조치)</p> <p>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 67명은 2003년 2월 28일까지 그 초과현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.</p> |